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이달희·김상훈·김정재

김기현 · 김미애 · 고동진

서범수 · 송언석 · 우재준

주호영 • 유용원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 5).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재난이"를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 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확 인이 제한되는 등 재난이"로 한다.

제7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	
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	
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	
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	
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1. (생략)
-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u>영</u> <u>상정보처리기기</u>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 라. (생 략)

- ② ~ ⑨ (생 략)
- ①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 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u>재난이</u> 발생 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 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1. (현행과 같음) 2
2
가
<u>ਕ</u> ੋ
<u> 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u>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①
<u>재난의 발생 가</u>
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
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
었으나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제한되는 등 재난이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 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 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③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 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

 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